

[별표 1]

평가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시설기준(제10조 관련)

○ 장비기준

구분	공기호흡기조작 및 사다리조법 등 (1·2급 화재대응능력)		소방활동장비 및 중증화재진압 등 (1·2급 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 장비기준	로프 공기호흡기 세트 사다리 마네킨	일반구조로프 45분사용 이상 (용적 6.2L 이상) 압력계 및 점멸등 경보음 보조마스크연결 가능 전장 시 7M 이상 복식사다리 (10명당 1개 이상) 25kg, 50kg (10명당 각각 1개 이상)	소방자동차 통신설비 소방호스 송배풍기 동력절단기 중증화재 자동차화재 화학보호복	펌프차(4인승 이상) 무선통신기기 공중전력 5W 이하 (10명당 1개 이상) 40mm, 65mm (2명당 1개 이상) 일반 송배풍기 (20명당 1개 이상) 엔진식 (10명당 1개 이상) 3층 이상의 화재진압 훈련장 승용차(중형이상) (30명당 1개 이상) 열화상카메라 (20명당 1개 이상) 레벨A (10명당 1개 이상)		
	소방보호구(방화복,헬멧, 안전화, 장갑 등) 및 활동복, 활동화, 활동모(소방공무원 복제)					
개인지참	방화복 헬멧 안전화 장갑	아라미드 90% 이상사용 KFI 인증 이상 KFI 인증 이상 KFI 인증 이상 KFI 인증 이상	개인로프	8mm 7m이하 구조용 로프	방열복	‘KFI 인증 이상

○ 시설기준

구분	공기호흡기 조작 및 사다리 조법	규격
시 설 기 준	공기호흡기 조작 훈련장	가로 7m이상, 세로 5m이상
	사다리 조법 훈련장	3층 이상의 높이 10m이상, 길이 3m이상
	소방활동장비 및 중층화재진압	규격
	수관조작(연장 및 회수) 훈련장	가로 30m이상, 세로 20m이상 공간 확보
	중층화재진압 훈련장	3층 이상의 높이 10m이상, 길이 20m이상
	특수화재진압	규격
	유류 및 가스 훈련장	가로 3m이상, 높이 : 2m이상, 가상 유류탱크 시설
	차량 화재 훈련장	훈련 시 폐차이용 화재를 재현 할 수 있는 공간 가로 7m이상, 세로 5m이상
	고층건물 화재진압 훈련장	4층(최상층 포함) 이상의 높이 13m이상, 길이 20m이상
	농연탈출 훈련장	진입 후 이동거리가 20m이상 탈출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

- 중앙(지방)소방학교, 교육대 훈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 지정운영
- 훈련장 등 시설물 부족 시 외부 위탁교육 운영(계획서 제출)

☞ 상기 표에 기재되지 않은 장비의 성능(규격) 한계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의 제5조 소방활동장비 기준 적용